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1323
------	------

2023. 12. 22.
문화체육관광위원회

I.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3년 10월 13일, 김춘곤 의원(찬성자 31명)

나. 회부일자 : 2023년 10월 23일

다. 상정결과 : 【서울특별시의회 제321회 정례회】

- 제6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3.12.19.)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 및 답변, 의결(원안가결)

II. 제안설명의 요지(김춘곤 의원)

1. 제안이유

- 전국적으로 체육시설의 안전관리가 미비하여 시설 이용자가 다치거나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서울시 시립체육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체육활동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체육환경 조성을 하고자 함.

- 또한 체육활동 중에 체육시설 이용자가 부상을 당하는 경우 응급조치를 할 수 있도록 시설관리자가 사용자에게 응급전문인력 배치를 사전에 공지하도록 하여 시민의 생명을 보호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시장은 체육시설에 대한 체계적인 안전관리 및 시민의 안전한 체육시설 이용을 위해 실태조사, 가이드라인 제작 배포, 안내표지판 설치 등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의2제1항)
- 시장, 수탁자 또는 사무를 위임받는 자는 체육시설의 사용자에게 응급전문인력 배치에 대해 사전 공지하도록 함(안 제4조의2제2항)

Ⅲ.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주우철)

가. 개정안의 개요

- 동 개정안은 시립체육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체육활동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함과 동시에 안전한 체육환경을 조성하고, 시민이 체육활동 중에 부상을 당하는 경우 응급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시설관리자가 응급전문인력 배치를 사전에 공지하도록 하여 시민의 생명을 보호하고자 발의된 안건임.

- 나. 시립체육시설의 체계적 안전관리와 안전한 시설 이용을 위한 사업 추진 근거 마련(안 제4조의2제1항)

- 개정안은 시장이 체육시설에 대한 체계적인 안전관리 및 시민의 안전한 체육시설 이용을 위해 ►실태조사 ►가이드라인 제작·배포 ►안내표지판 설치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함.
- 현재 시립체육시설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근거로 정밀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정기점검, 긴급점검하고 결과에 따라 조치하는 등 안전관리를 수행 중임.

< 체육시설 안전점검 주기 >

안전등급	정밀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정기점검	긴급점검
A 등급	4년 1회 이상	6년 1회 이상	반기 1회 이상	필요하다고 판단한 때 (손상점검, 특별점검)
B·C 등급	3년 1회 이상	5년 1회 이상		
D·E 등급	2년 1회 이상	4년 1회 이상	1년 3회 이상 (해빙가·우가·동절기 전 1회)	

이에 따라 법적인 안전점검 주기에서 벗어나 방치되어 있는 시설의 안전한 이용 환경을 도모하기 위한 실태조사 실시는 적극적인 반영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며, 더불어 가이드라인 제작·배포와 안내표지판 설치를 통해 시민들의 시립체육시설 이용에 안전과 편의성을 높여줄 것으로 보임으로 타당한 조치로 판단됨.

- 또한 문화체육관광부는 국가 차원의 체육시설 안전관리 실태조사와 가이드라인 제작·배포는 준비 중인 동시에 안내표지판은 기 운영 중에 있으나 대상 범위가 넓고 법적으로 구속력이 없는 소관도 존재하므로 서울시 차원에서의 관내 시립체육시설을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 가이드라인 수립을 고려해 볼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됨.

다. 응급전문인력 배치(안 제4조의2제2항)

- 안 제4조의2는 시립체육시설의 수탁자 또는 사무를 위임받는 자가 체육시설의 사용자에게 응급전문인력(의사, 간호사, 응급구조사)을 참여인원수에 따라 배치하도록 사전에 공지하도록 규정함.
- 2023년 한 해에만 시립체육시설 이용 중 35건의 안전사고가 발생(붙임1 참조)하는 등 지속적인 사고 문제가 대두되고 있어 타당한 조치로 판단되며, 문화체육관광부는 「스포츠행사 안전점검 매뉴얼(2023.3.6.발행)」을 통해 스포츠행사 시 참여 인원 수에 따른 응급전문인력 배치 기준을 마련해 의사, 간호사, 응급구조사 배치를 유도하고 있음.

< 스포츠행사 안전점검 매뉴얼 >

※ 행사운영 시 응급전문인력 편성/배치 기준(매뉴얼 28p)

- ▶ 응급상황 시 의료행위 및 처치가 가능한 전문인(의사, 간호사, 응급구조사) 1명을 반드시 함께 편성
- ▶ 선수/관람객 참여인원 에 따른 응급전문인력 수
 - 1,000명 이상 참여 예상 : 최소 3명
 - 500명 이상 1,000명 미만 참여 예상 : 최소 2명
 - 500명 미만 참여 예상 : 최소 1명

따라서 조례에 이를 명기해 응급전문인력 배치를 강제하는 것은 법적인 문제가 없으며, 오히려 이를 통해 스포츠행사 시 시민들의 안전한 체육 활동을 도모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사료됨.

Ⅳ.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Ⅴ. 심사결과 : 원안가결(재적위원 9명, 참석위원 명, 참석위원 전원찬성)

Ⅵ. 소수의견 요지 : 「없음」

Ⅷ.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춘곤 의원 발의)

의안 번호	1323
----------	------

발 의 년 월 일: 2023년 10월 13일

발 의 자: 김춘곤 의원(1명)

찬 성 자: 강석주, 경기문, 곽향기,
김경훈, 김규남, 김길영,
김동욱, 김영철, 김원태,
김재진, 김지향, 김태수,
김형재, 남궁역, 남창진,
민병주, 박춘선, 박환희,
신복자, 옥재은, 윤기섭,
이경숙, 이병윤, 이상욱,
임춘대, 최민규, 최윤희,
한 · 신, 허 · 훈, 홍국표,
황철규 의원(31명)

1. 제안이유

- 전국적으로 체육시설의 안전관리가 미비하여 시설 이용자가 다치거나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서울시 시립체육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체육활동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체육환경 조성을 하고자 함.
- 또한 체육활동 중에 체육시설 이용자가 부상을 당하는 경우 응급조치를 할 수 있도록 시설관리자가 사용자에게 응급전문인력 배치를 사전에 공지하도록 하여 시민의 생명을 보호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시장은 체육시설에 대한 체계적인 안전관리 및 시민의 안전한 체육시설 이용을 위해 실태조사, 가이드라인 제작 배포, 안내표지판 설치 등을 할 수 있도록 함. (안 제4조의2제1항)
- 나. 시장, 수탁자 또는 사무를 위임받는 자는 체육시설의 사용자에게 응급전문인력 배치에 대해 사전 공지하도록 함. (안 제4조의2제2항)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

다. 기타 : 신 구조문대비표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의 제목 “(안전한 환경의 유지·관리 등)”을 “(체육시설의 안전한 환경 조성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2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중전의 제목 외의 부분) 제3호 중 “사항을”을 “사항과 응급전문인력(의사, 간호사, 응급구조사)을 참여인원수에 따라 배치하도록”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시장은 체육시설에 대한 체계적인 안전관리 및 시민의 안전한 체육시설 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체육시설 안전관리에 필요한 실태조사
2. 체육시설의 안전한 이용을 위한 가이드라인 제작·배포
3. 체육시설의 안전한 이용을 위한 안내표지판 설치
4. 그 밖에 시장이 체육시설의 안전한 환경 조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4조의2(안전한 환경의 유지·관리 등) <신설> 시장, 수탁자 또는 제23조에 따라 사무를 위임받은 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2. (생략) 3. 체육시설의 사용자에게 제2호의 사항을 사전에 공지하여야 한다.	제4조의2(체육시설의 안전한 환경 조성 등) ① 시장은 체육시설에 대한 체계적인 안전관리 및 시민의 안전한 체육시설 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체육시설 안전관리에 필요한 실태조사 2. 체육시설의 안전한 이용을 위한 가이드라인 제작·배포 3. 체육시설의 안전한 이용을 위한 안내표지판 설치 4. 그 밖에 시장이 체육시설의 안전한 환경 조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 ----- -----. 1.·2. (현행과 같음) 3. ----- -- <u>사항과 응급전문인력(의사, 간호사, 응급구조사)을 참여인원수에 따라 배치하도록</u> ---.

문 서 번 호

2023092500000004

비 대 상 사 유 서

요 청 인 : 김춘곤 의원

담 당 : 오희선 과장
이정수 팀장
손제승 주무관

접 수 일 : 2023.09.25.

회 신 일 : 2023.09.27.

내용문의 : 02-2180-7954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비대상사유서

목 차

1. 판단 근거
2. 작성자



서울특별시의회 사 무 처
재정분석담당관
Seoul Metropolitan Council

1. 판단 근거

-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4조의2(체육시설의 안전한 환경 조성 등)를 변경·신설함에 따라 관련 비용이 발생하지만 소관부서 확인결과 제4조의2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별도로 실시하고 있고, 제1항제3호의 안내표지판은 기설치하여 운용 중이므로 비용추계 대상에서 제외함
- 제4조의2제2항제3호는 응급전문인력(의사, 간호사, 응급구조사) 배치에 대해 사전 공지하도록 한 조항으로 서울시 재정수입 순감소나 재정지출 순증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 비용추계 대상이 아님

2. 작성자

시의회사무처	재정분석담당관
담 당 관	오희선
추계세제팀장	이정수
주 무 관	손제승
	☎ 02-2180-7954
	e-mail : smclt22@seoul.go.kr

※ 이 서류는 의안 발의 시 첨부하지 않는 자료입니다.